

■ 하천법 시행규칙 [별표 5]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제19조제1항 관련)

점 용 의 유 형	점 용 기 간
1. 토지의 점용	5년
2. 하천시설의 점용	5년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가. 공공용 또는 공용의 교량·철도·상수도관로·통신선로 등의 설치	영구
나.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관로 등을 매설하는 것을 포함한다.)	5년
다.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공사를 하기 위한 점용	설계서에 적혀 있는 공사기간
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1년
5.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5년 이내
6. 스케이트장·도선장 또는 유선장의 설치	
가. 스케이트장의 설치	1년
나.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설치	3년
7. 식물의 식재	1년
8.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3년
9. 선박의 운항	3년